■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[별지 제12호서식] <개정 2017. 7. 26.>

# 정보보호 전문서비스 기업 합병신고서

※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고인이 적지 않습니다.

| 접수번호 | 접수일 | 처리기간 즉시 |
|---|---|---|

| | | |
|---|---|---|
| 합병으로 소멸되는 법인(갑) | 업체명 | 전화번호 |
| | 대표자명 | 생년월일 |
| | 주소(주된 사무소의 소재지) | |
| 합병으로 소멸되는 법인(을) | 업체명 | 전화번호 |
| | 대표자 성명 | 생년월일 |
| | 주소(주된 사무소의 소재지) | |
|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| 업체명 | 전화번호 |
| | 대표자 성명 | 생년월일 |
| | 주소(주된 사무소의 소재지) | |
| 합병 후 신설되는 법인 | 업체명 | 전화번호 |
| | 대표자 성명 | 생년월일 |
| | 주소(주된 사무소의 소재지) | |
| 합병사유 | | |

「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」 제23조제1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.

년 월 일

합병으로 소멸되는 법인(갑)대표자 (서명 또는 인)

합병으로 소멸되는 법인(을)대표자 (서명 또는 인)

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대표자 (서명 또는 인)

합병 후 신설되는 법인 대표자 (서명 또는 인)

**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** 귀하

| | |
|---|---|
| 첨부서류 | 1. 합병계약서 사본<br>2. 합병에 따라 설립되거나 존속하는 법인에 관한 「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 제10조제1항 각 호의 서류(합병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)<br>3. 관리기관의 장이 그 기관에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정보보호 전문서비스 기업이 다른 정보보호 전문서비스 기업과 합병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한다는 확인서 |

210mm×297mm[백상지 80g/㎡]